

[별표 4] <개정 2021. 6. 1.><개정 2023. 12. 1.>

경력환산 기준표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군 복무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문화재단 근무 경력	100%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 (유치원 제외)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100명이상)의 기업체	80%
1. 적용대상 경력 증빙자료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유효함)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이후 제출시 적용여부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부득이한 사유, 경력사항 증빙 등)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경력증명 등이 있어야 환산 가능. 다만, 최대 경력 인정 범위는 2급 20년, 3급은 17년, 4급은 14년, 5급은 11년, 6급은 9년, 7급은 7년, 8급5년 9급은 3년, 공무원직 2년으로 함. 3. 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함 4. 재단 설립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및 중랑구 임기제공무원에서 재단에 채용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별도의 경력을 산정하지 아니함.	